

16 (第115回-建設第5次)

<p>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 세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공단의 임·직원</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p> <p style="text-align: center;"><u>검토보고서</u></p> <p>세안이유의 검토</p> <p>시장은 세안이유에서 밝히지 않았으나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처리장이 갖고 있는 공공시설의 비중으로 보아 위탁경영대상으로 선택해야 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p> <p>조례안 검토요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안 제6조(설치·개축 또는 수선)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개축 또는 수선의 시행기관은 하수도시설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개축 또는 수선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시설기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해야 할 것임. 조례안 제9조(관리·운영시설)중 “시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별표와 같다”는 세3조(설치)중 “하수처리시설은 별표와 같다” 하였고 별표에서는 “하수처리시설(제3조 관련)”이라 하였으므로 별표중의 “(제3조 관련)”은 삭제해야 제3조 제9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임. 조례안 제10조(수탁기관 선정) 제2항중 “……원칙으로 하되,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 	<p>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대상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하수도법령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로 하여 민간위탁대상 기관에 근무한 지원들의 경험과 기술력이 시설관리·운영에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임.</p> <p>제3항 중</p> <p>“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 하였으므로 “……선정위원회……”를 “……선정심의위원회……”로 함이 타당할 것임.</p> <p>5. 조례안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중 제6항의 규제규정 검토</p> <p>제6항 중</p> <p>“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 이내에 관리·운영비용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공인회계사 등 공인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수탁기관의 결산시점이 11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는 회계연도 경과후 2월 이내 결산서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만약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1년에 2번씩 결산서를 작성해야 할 것임. 이는 비합리적인 규정이므로 국세법상 결산시한인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제6항을</p> <p>“수탁기관은 관리·운영비용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공인회계사 등 공인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와 함께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함이 타당할 것임.</p> <p>6. 제14조(위탁의 취소)중 제1항제3호</p> <p>“수탁기관이 시장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는</p>
---	---